

## 한국균학회 학술정보위원회 규정(2012. 10. 11. 개정)

제1조 (설치근거 및 목적) 본 학회 회칙 제7장 제27조에 근거하여 학술정보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는 학회의 각종 학술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계획, 관리, 추진에 관련된 업무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 및 위원 선출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간사 3인 및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,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

제3조 (임무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임무를 수행한다.

1.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의 조직, 기획, 추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
2. 학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후보 추천 업무에 관한 사항
3. 운영위원회와 협의 한 각종 학술 진흥에 관한 제반 사항
4. 한국균학회 소식지 원고모집, 편집, 인쇄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
5. 학회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 사항
6. 위원회의 규정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
제4조 (임기) 위원장, 간사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,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 위원회 회의 소집 시 해외 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.

④ 학회 제 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.

제6조 (보고) 위원회는 사업업무를 이사회,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제7조 (기타사항)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유효하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유효하며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